

# 구입(물품·기타) 지출결의서

[신년도]

증 제 호				일 상 경 비			
				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			
				세 출 과 목			
발 의		인	조 직	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	발 의		인
원인행위부 기 재		인	정 책	교량관리	지출부기재		인
주 문		인	단 위	교량시설물 운영			인
납 품		인	세 부	교량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 관리	지급명령 발행부기재		인
검 수		인	편성목	일반운영비	지급명령 번호	제 호	
물품출납부 기 재		인	통계목	사무관리비			
<b>금350,000원(금삼십오만원)</b>							
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. 년 월 일							
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소문동)							
상 호 교량안전과							
성 명 교량안전과 인 전 화 번 호							
적 요	교량 안전점검용 필드스코프 삼각대 구매			거래은행	우리은행		
				계좌번호	1006301416499		
위 금액을 청구함.				위 금액을 영수함.			
년 월 일 성명 교량안전과 인				년 월 일 성명 교량안전과 인			
주 관 과	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일상경						
취 급 자 인							

## 구 입 물 품 명 세 서

(단위:원)

품 명	규 격	단위	수량	단가	금액	비고
카메라삼각대	카메라삼각대 [대표번호, 수정요망]	대	1.	350,000.	350,000	교량 안전점검용
기타부대비용	-	-	-	-	0	
합계					350,000	

### 승 락 사 항

1. 2018년 01월 29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, 그 납품 중 검사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 하겠음.
2.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,000분의( 0.8)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.
3.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·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.
4.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.
5.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.